「17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」 전문 위탁 운영 용역

과 업 협 상 서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 이 근

(사)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

대 표 자 이 태 성

「17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」 전문 위탁 운영 용역

Ⅰ 사업소개

Ⅰ 협상개요

가. 사 업 명 : 「'17년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」전문위탁 운영용역

나. 사업목적 : 의류제조산업의 '자원낭비', '환경파괴' 및 '만성적 침체'라는 부정적 부분을 개선하고자 미래세대와 인권, 환경을 배려하는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산업을 키워드로 지속가능 패션허브 조성,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업을 전개해 서울의 신성장 트랜드로 도모하고자 함

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'17년 12월 31일(일요일)까지

라. 협상금액 : 331,199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마. 사업자 선정 방식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바. 추진경과 : 1, 2차 유찰, 3차 평가심사('17.6.23) 통과

사. 협상대상자 : 사단법인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(대표자 이태성)

- 사업장 주소 :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, 3층

아.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

1) 기업 입주 지원 및 운영

◦ 성장기 기업(2개), 스타트업 기업(5개), 예비창업자 4(명 또는 팀) 기업 입주 시 적절한 공간 배분 및 사업안착을 위한 행정 및 서비스 지원

◦ 공동작업 및 아이디어 협의 공간 공동 운영

2) 교육 컨설팅

◦ 환경, 인문 , 산업, 경영 등 육성 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

◦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의 상담 지원

◦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

3) 공동판매장 조성 및 운영

◦ 공동판매장 장소 제안 및 구축

◦ 공동판매장 상품 전시 및 판매

◦ 판매 및 재고관리

4) 공동캠페인 기획 및 추진

◦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상품의 매출증진을 위해 이벤트 기획 및 추진

◦ 우수상품 및 우수기업 스토리 발굴 및 이슈화

◦ 일반 시민대상 체험과 관심 유도하는 캠페인 계획 및 추진

5) 기타

◦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 사업은 민*관 협의체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며 본 사업의 위탁업체는 수행기관으로 참여 예정

◦ 당초 예정된 일시·참여대상 등 변동이 생길 경우,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과업 수행

◦ 주간·월간·최종결과와 관련 해당 사안의 기간에 협의 진행 및 관련 사항 공유

◦ 월례보고(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) 월 1회

◦ 주간보고(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) 주 1회

◦ 결과보고 : 사업 종료 후 평가회의 1회 진행

◦ 최종 제출물(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자료) 일체, 용역 정산 보고서

Ⅱ 추진 경과

가. 제안서 평가 심사

1) 일 시 : 2017. 6. 22(목) 14:00 ~ 18:00

2) 장 소 : 유어스빌딩(DDP패션몰) 4층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

3) 평가위원 : 7명

4) 평가 결과 : 적격

구 분	배점	제 안 업 체	
		001사 (수의계약 적격여부 평가)	비고
객관적 평가	10	8.150	
주관적 평가	70	64.28	
가격 평가	20	20	
합 계	100	92.43	
평가결과	적격/ 부적격	**수의계약 적격 선정**	

5) 평가의견(위원별)

□ 권송환 : 윤리적 패션허브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될 것임. 신규 사업으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시장에 기여한다는 헌신적인 생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야 할 것. 그런 의미에서 12월까지는 사업기간이 매우 짧음.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 필요 최소 2~3개월은 연장해야 할 것
또한 공동판매장 구축 보다는 프로모션을 통해 이슈화 하고 시장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

□ 주보림 : 윤리적 패션에 대한 전문성은 보이나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, 구축, 홍보, 캠페인 등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 필요

□ 남중이 : 제안발표 내용처럼 판매망은 윤리적 패션허브 입주기업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됨. 추가적인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열어야 하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재단과 함께 협력해 구체화해야 할 것

□ 임선옥 : 디자인개발을 하는 업체도 친환경적인 염색을 하는 기업 또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기업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음. 그 분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. 판매 기회 뿐만 아니라 공간 대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구상이 있었으면 함

□ 하정선 : 기존 윤리적 패션 기업 지원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이었으면 함. 민간위탁운영 업체의 역할이 큼

□ 김도엽 :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했으면 함

□ 심영신 외 다수 :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증명이 됨. 교육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재구성 했으면 함

나. 협상 내용

1) 협상일시 및 주요 내용

구분	1차(6.27)	2차(7.4)
참석자	재단: 신미선 책임 한국 윤리적패션네트워크 : 이미영 이사, 이지영 사무국장	좌동
장소	재단 사무실 (유어스빌딩 4층)	재단 사무실 (유어스빌딩 4층)
주요 내용	○ 평가위원 의견서 공유 및 반영요청 (사업기간 연장, 프로모션 후 공동판매장 조성, 많은 기업들의 발굴 및 참여를 위한 방안 등)	○ 의견서 및 사업 수정 보안서 제출 - 사업기간 연장 미반영 - 프로모션 강화 방안 제출 -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방안 제출

Ⅲ 협상결과

Ⅰ 추진방향

가. 평가의견을 통한 개선사항

평가의견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	반영내용
○사업 운영기간의 적절성 및 연장 검토 ○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 강화 ○교육 과정 재구성 필요 ○신진디자이너, 의류제조기업들이 윤리적 패션허브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방안	○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, 온·오프라인 플랫폼 구축, 홍보 및 프로모션 강화의 필요성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 있어 운영기간 유지 ○허브를 거점으로 윤리적 패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- 캠페인 실행, 윤리적패션쇼 개최 세부기획안 제출 ○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또는 유관행사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가 지원 ○입주 기업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 후 실무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 ○ 윤리적패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- 지원 방향 및 네트워크 확대 방안 논의

나. 주요 개선내용

■ 프로모션 및 캠페인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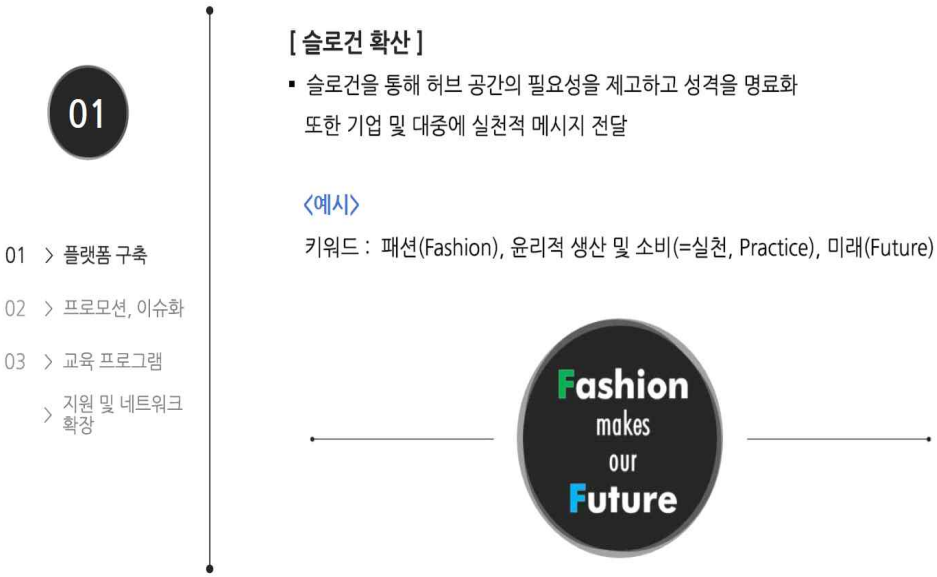

01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▪ 슬로건을 바탕으로 온·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전략 수립

〈예시〉

온라인	오프라인
• 문화,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2~3회 시민 캠페인 진행 • 윤리적 패션 허브 슬로건 하에 캠페인-크라우드 펀딩 연계 •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커뮤니티 활성화	• 허브 공간 투어 프로그램 마련 : 초, 중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확대 • 판매 공간에서 판촉 이벤트, 프로모션 등 진행
• 윤리적 패션쇼 개최 •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해 온·오프라인 캠페인 진행	

02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>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▪ 예시 ③ '윤리적패션허브' 단독 패션쇼 개최
- 윤리적 패션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
- 그래픽,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해 접근도 높임
- 실천적 메시지 전달

⇒ 일상 속에서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문화적 장(場) 마련

■ 입주 기업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 후 실무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

03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>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[설문조사]

▪ 온라인 설문조사
- 입주 기업 및 윤리적 패션 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실시
- 설문 답변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

[커리큘럼 차별화]

▪ 실무형/참여(체험)형/ 네트워킹 구분

〈예시〉

형태	대상	커리큘럼	형식
실무형	윤리적 기업, 관련해 창업,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인 기업 또는 개인	파이낸스, 마케팅 등	오픈 아카데미
참여(체험)형	패션에 관심이 많은 대중 다수	친환경 염색, 디자인, 제작 등	오픈 아카데미
네트워킹	입주 기업 네트워크 모임	디자이너, 영업, 기획 등 업무별 또는 이슈별 소모임 주최. 장려	입주 기업 대상 이후 확대

■ 윤리적 패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로 향후 지원방향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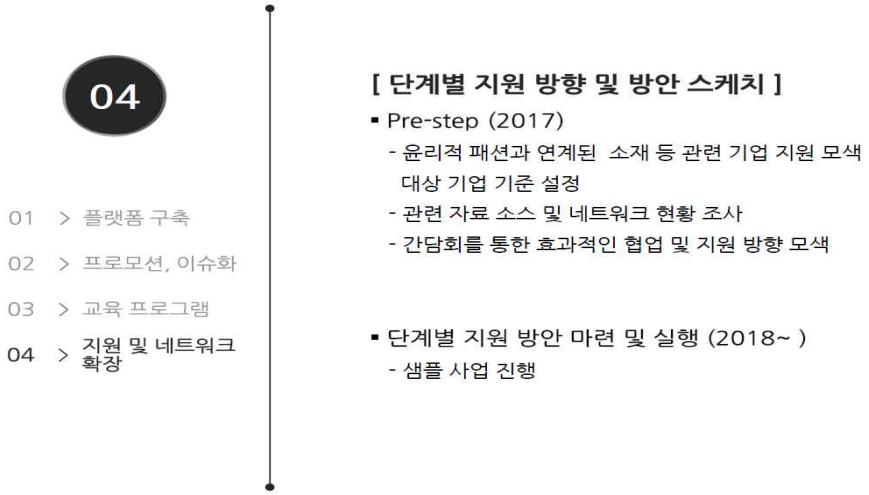

Ⅱ 사업 추진 주요 내용

가.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 운영

◦ 사업목적 : 지속가능 패션허브를 동대문에 조성해 인재육성 → 창업지원 →마케팅 강화 등 생태계 순환구조 마련

◦ 사업장소(안) : 서울디자인지원센터 5층(182.69평)

◦ 운영범위

- 지속가능 패션허브 시설관리 (공용공간) : 프린터기, 식수대 대여, 소모품비 등
- 상담 및 컨설팅 요청 시 응대 및 운영보고서 제출 (매주, 매월, 연간 보고서에 반영)
- 인큐베이팅 교육 및 컨설팅 추진
- 입주기업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
- 패션허브 및 입주기업 홍보

◦ 입주기업 선발(재단 직접 수행) : 총7개 기업, 예비창업자 4(명 또는 팀) 선발 예정

구 분	[1그룹] 성장기 기업	[2그룹] 스타트업 기업	[3그룹] 예비창업가
지원 대상 및 규모	◦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 3년 초과인 업체 ※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서울시에 한함 ◦ 유사 업종 및 신규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, 멘토링 경험이 있는 기업 ◦ 윤리적 패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◦ 입주 기업간 공동사업 추진 의지 및 재정부담 역량을 보유한 기업	◦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 3년 미만 브랜드 ◦ 윤리적 패션 제품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 ◦ 입주 단체간 공동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을 보유한 단체	◦ 지속가능 패션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팀
	2개사	5개사	4명 내외
지원 분야	◦ 1순위 패션의류(여성복, 남성복, 캐주얼 등 ◦ 2순위 패션잡화(가방, 신발, 액세서리 등)		

◦교육 및 컨설팅 범위

- 교육기간 : 1일 워크샵 / 4주 프로그램 등 길잡이 교육
- 교육대상 :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, 시민
- 교육목표 인원 : 400명
- 교육과정 : 윤리적 패션 일반, 브랜딩, 마케팅, 유통, MD 등
 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실용적인 교육
- 교육장소 : 「지속가능 패션허브」 회의실 혹은 메이커스 랩(유어스 4층)

03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>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[설문조사]

▪ 온라인 설문조사
- 입주 기업 및 윤리적 패션 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실시
- 설문 답변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

[커리큘럼 차별화]

▪ 실무형/참여(체험)형/ 네트워킹 구분

<예시>

형태	대상	커리큘럼	형식
실무형	윤리적 기업, 관련해 창업,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인 기업 또는 개인	파이낸스, 마케팅 등	오픈 아카데미
참여(체험)형	패션에 관심이 많은 대중 다수	친환경 염색, 디자인, 제작 등	오픈 아카데미
네트워킹	입주 기업 네트워크 모임	디자이너, 영업, 기획 등 업무별 또는 이슈별 소모임 주최. 장려	입주 기업 대상 이후 확대

나.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 공동마케팅

◦ 사업목적 : 관련기업의 매출을 증대하는 공동판매장을 조성,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신진디자이너, 봉제기업, 창업지원자들의 윤리적 패션 시장 진입 유도

◦ 사업장소(안): ddp 또는 현대백화점, 현대시티 아울렛 등과 협의 중

※ ddp 장소는 프로모션 위주로 민간매장은 상설매장 추진 검토 중

◦ 운영기간(안): '17.8~12

◦ 공동판매장 역할

구 분	주요내용
판매 및 재고관리	지속가능 패션 상품 진열 및 판매, 재고관리 및 정산 등
소규모 기업 컨설팅	매장 내 지속가능 패션시장 상담 예약 마련 주어진 시간에 기업 상담 추진예정
공동 프로모션	매장 내 프로모션 및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참여 유도 매장 내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

다. 지속가능 패션허브 공동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 및 지원 및 추진 강화

- 재단과 협력해 공동이슈화 주력하고 재단 사업 연계 강화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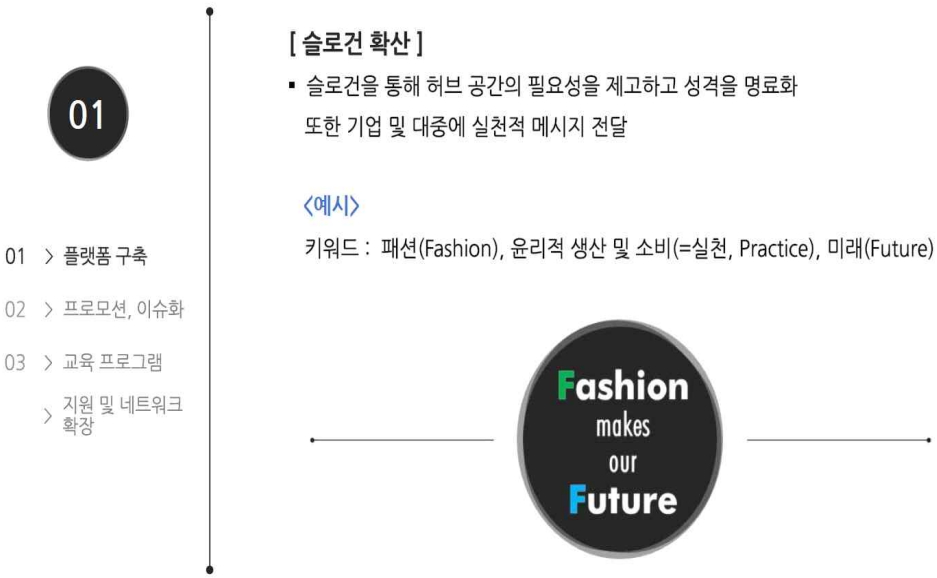

01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>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▪ 슬로건을 바탕으로 온·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전략 수립

〈예시〉

온라인	오프라인
• 문화,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2~3회 시민 캠페인 진행 • 윤리적 패션 허브 슬로건 하에 캠페인-크라우드 펀딩 연계 •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커뮤니티 활성화	• 허브 공간 투어 프로그램 마련 : 초, 중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확대 • 판매 공간에서 판촉 이벤트, 프로모션 등 진행
• 윤리적 패션쇼 개최 •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해 온·오프라인 캠페인 진행	

02

01 > 플랫폼 구축
02 > 프로모션, 이슈화
03 > 교육 프로그램
04 > 지원 및 네트워크 확장

▪ '윤리적패션 단독 패션쇼' 개최(예시 ③)
- 윤리적 패션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
- 그래픽,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해 접근도 높임
- 실천적 메시지 전달
- 정기 패션쇼로의 가능성 타진

⇒ **일상 속에서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문화적 장(場) 마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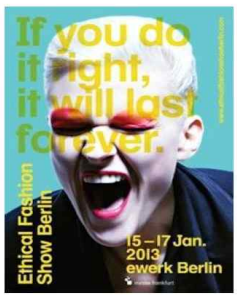

Ⅲ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

가. 기타 **준수사항**

구 분	내 용
홍 보	□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허브 공동이슈화를 위한 홍보 지원
협 력	□ 유관기관 협력 유치 및 활용계획 방안제시 □ 지속가능(윤리적) 정책협의체 운영 및 지원
안 전	□ 운영 기간 및 사업진행시 안전사고 대비 계획 및 운영 매뉴얼 정립
기 타	□ 기타 사업시행 후 만족도 조사 등 개선사항 도출해야 함

나. 사업수행 지침

□ 과업수행 지침

※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"발주기관"으로, 과업 수행자는 "계약상대자"로 칭한다.

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.

◦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◦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.

◦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◦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
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□ 과업의 효력

◦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②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③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④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⑤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⑦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⑧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

인정되는 경우

⑨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
⑩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
◦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다. 착수보고 지침

□ **착수 보고 지침**

◦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·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.

◦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사업운영 계획을 제시한다.

◦기획 ,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

◦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□ 착수보고 시 업무분장 및 역할 명시

◦사업의 질적,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에듀케이터와 대표사(공동수급 시 협력사)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.

◦교육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(조직)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◦사업의 활성화와 취/창업을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요청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□ 수행 환경

①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.

② 본 사업은 서울의 윤리적 패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추제 발굴 및 시장확대를 위해 추진한다.

③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·진행한다.

④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협상서,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⑦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
⑧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,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.

⑨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라. 기타

① 본 협상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

②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,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.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
⑤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

본 협상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될 내용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.

2017.7.4.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 이 근

(사)한국윤리적 패션네트워크

대 표 자 이 태 성

붙임 1

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

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『**'17년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』 전문위탁 운영**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및 제44조(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)

2.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』(행정자치부 예규 준용)

3.『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』(행정자치부고시)

4.『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』 준용

제2조 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'협상적격자'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2. '협상대상자'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기준은 『**'17년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』 전문위탁 운영**에 적용하되,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.

제4조 (제안서 평가)

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,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/100과 입찰가격 평가 10/100으로 한다. 평가항목 및 배점은 [붙임 4]와 같다.

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,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.

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(90점)는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[별표]의 기술인력 보유상태, 수행경험(실적), 경영상태,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,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[붙임 5]와 같다.

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. 이 경우 최고점수.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.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[붙임 6]와 같다.

⑤ 입찰가격 평가(10점)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(정성적 평가)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,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제5장 [별표1] 규정에 의거 [붙임 7]과 같다.

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(항목)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다만, 비교.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(이상.미만 등)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.

제5조 (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)

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.

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.

③ 가격제안서(입찰서)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.

제6조 (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)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.

제7조 (협상절차)

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.

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.

제8조 (협상내용과 범위)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, 이행방법, 이행일정,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가격의 협상)

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.

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 (협상기간)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, 해당사업의 규모, 특수성,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협상결과의 통보)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계약체결 및 이행)

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.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, 특수조건,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.

제13조 (평가결과 공개)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,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.